

의안번호	2216451
의 퇴 인	복기왕 의원
회 답 일	2026. 5. 7.
추계번호	26B0567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제8호의4(정의) 신설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8의4. “식품접근성”이란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·사회적 조건을 말함<신설>	의무규정
2	안 제23조의2제2항(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2항) 1. 식품 판매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. 식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·배송서비스 지원 3. 고령 농업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식생활 돌봄프로그램 운영 지원 4. 그 밖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23조의6(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·시행)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6의2.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<신설>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3항) 4의2.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<신설>	재량규정
4	안 제54조(농촌주민의 복지증진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, 의료서비스 확충, 문화생활의 증진, 식품접근성 제고,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, 다문화(多文化) 가족의 정착,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제8호의4(정의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3조의2제2항(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) 신설	
3	안 제23조의6(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·시행)	
4	안 제54조(농촌주민의 복지증진)	

2. 상세 사유

□ 식품접근성 제고(안 제3조제8호의4 신설 등)

-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먹거리계획 수립·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

<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예산: 2022~2026년>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2	2023	2024	2025	2026
■ 지자체 계획수립	• 100백만원×지자체 보조 50% × 20개 지역	1,000	1,000	-	-	-
	소계	2,150	2,150	450	450	450
■ 확산기반 조성	• 교육·홍보	800	900	-	-	-
	• 사회적 가치 확산 촉진	850	750	250	250	250
	• 식재료 규격 표준화	-	-	-	-	-
	• 직거래 종합정보	500	500	200	200	200
	소계	300	300	-	-	-
■ 푸드플랜 운영	• 안전·품질 관리	(지방이양)	(지방이양)	(지방이양)	(지방이양)	(지방이양)
	• 기획생산체계 구축	300	300	-	-	-
■ 먹거리통합지원 센터 지원	• 센터 1개소당 6,000백만원 (국비 40%, 2,400백만원) - 지자체 자본보조(2년 사업) - 1년차: 설계비, 컨설팅 비용 등 - 2년차: 건축, 시설, 장비, 부대 시설 비용 등	300 강원 화천	2,400 강원 화천 경기 안성	2,400 경기 안성 전북 전주	2,400 전북 전주 경북 의성	2,400 경북 의성 강원 고성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- 개정안은 식품접근성을 취약계층이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잡힌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책적·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식품 판매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, 식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·배송서비스 지원, 고령 농업인과 지역주민에 대한 식생활 돌봄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

- 또한,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·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, 농촌주민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·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